

외국인력정책과 이민정책의 진로

허재준*

청년층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학교에 더 머무르고 그렇게 1년을 늦춰 졸업한 후에도 일자리를 찾아 첫 직장을 가질 때까지 다시 1년 가까이를 탐색한다. 인구가 줄고 일할 사람의 절대수가 줄어들면 구직난이 아니라 인력부족이 심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 우리 경제가 필요한 만큼 이상의 대졸자를 배출하는 한 대졸자 구직난은 30년이 지나도 현재진행형일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 대졸자를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넉넉하게 잡아도 전체 일자리의 25%를 넘지 않는다. 대졸자 일자리가 많다는 나라들에서도 35%를 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외국인력 도입 쿼터는 소진되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외국인력을 더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다. 사업장마다 외국인력 고용에 상한이 있어 외국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만, 필요만큼 다 고용할 수 없는 사업체가 있는 반면, 필요 인력이 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체가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외국인력정책 기조 아래에서 이러한 현상은 불가피하다.

외국인력 도입이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을 낮춰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므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엄격하게 관리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외국인력 수요와 공급 간의 괴리를 방관하고 시간이 지나기를 기다리거나 외국인력 공급을 줄이는 것이 그나마 유지되고 있는 생산 잠재력을 잠식하지 않고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해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확언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보인다. 뿌리산업이라고 일컬어지는 산업의 3차 협력업체에까지 내려가 보면 30~40%의 인력이 외국인 근로자이고 이들이 없으면 상당수 뿌리산업 사업체는 유지될 수 없다. 그러니 일률적 구조조정 필요성만으로 외국인력정책을 규율할 수 없다.

불황기에는 내국인 일자리도 없는데 웬 외국인근로자 수입이냐고 한두 마디씩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상황타개를 위해 무언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할 거리가 필요한 탓에 정책결정자들은 외국인 근로자 신규도입 규모를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금융위기가

*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정책연구본부장(hurjj@kli.re.kr).

있었던 2008~2009년도와 같은 시기에는 기존 출국자를 대체하는 정도 외에는 실질적으로 신규도입 외국인 근로자는 허용되지 않았다. 사실 대졸자 구직난과 중소기업 생산인력 구인난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그런데 대졸자 구직난으로 대표되는 국내 노동시장 사정이 어려워지면 외국인력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정책 의사결정의 정치경제학과 외국인력 도입정책 취약성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이러한 사례는 외국인력정책이 상위 개념의 이민정책 아래에서 조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시장 변화가 생기면 손해를 보는 사람과 이익을 보는 사람이 생긴다. 교과서적으로는 이때 이익을 보는 사람의 이익을 덜어 손해 보는 사람을 보상하고도 남는다면 그러한 무역자유화 시도는 국민 모두에게 이익이 되게 할 수 있다. 국경 간의 상품이동 자유화가 아닌 인력이동도 마찬가지로의 원칙을 적용해서 정책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업이 그 이익의 일부를 부담해서 외국인력 유입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보상하는 원칙을 확립할 수 있다. 이해조정이 어려워져 시도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생각이 이해조정을 아예 불가능하게 하고 실행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일지도 모른다. 추가적 도입비용을 지불하고 좀 더 원하는 만큼의 외국인력을 쓰고자 하는 중소기업 사업주들도 없지 않을 것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방법이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여전히 5년 이내만 일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정책기조가 외국인력정책의 근간이다. 그런가 하면 일시 귀국 후 재입국하면 다시 5년 가까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된다. 높은 임금을 받으며 높은 생산성을 증명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면 영주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가족의 결합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 이전에 앞으로 진행될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민정책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년의 거주를 허용하고 가족의 결합이나 영주의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국제규범에도 합치하지 않다.

2040년 우리나라의 중위연령은 52.6세로 일본과 같아진다. 저성장과 고령화로 어려움을 이미 겪어 온 유럽 국가들은 2040년 한국보다 훨씬 젊은 중위연령을 가질 것이다. 2040년 프랑스의 중위연령은 42.7세, 영국은 42.4세가 된다. 고령화가 가장 심하다는 독일도 50.0세 수준일 것이다. 이들 국가는 현재 한국보다 중위연령이 높은 나라들이다. 미국의 중위연령은 그때에도 39.6세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가진 나라일 것이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그만큼 빠르고 심각하다.

연금제도 개혁을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 세금과 연금보험료를 낼 사람은 적게 태어나고, 연금을 받을 사람은 점점 더 오래 살며, 성장률은 점점 더 떨어져 공간을 채울 세금은 점점 더 덜 걷히는 현상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 현세대와 차세대 간의 형

평성 문제도 있지만 이 때문에 갈등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면 순진한 생각일 것이다. 덜 낡고, 오래 살고, 덜 견히는 현상이 나라 곳간에 가하는 압박이 심해지다 못해 조만간 폭발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은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갈등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는 중요한 탈출구도 바로 적절한 이민정책 수립에 달려 있다.

KL